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146호

「항만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항동7가 90)에 불법으로 가설 컨테이너를 무단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부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항만시설(부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9.23. ~ 2026.10.27.(5주간)

3. 공고사유 : 무단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대상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항동7가 90	가설컨테이너	1개소	우리청 또는 제3자(인천항만공사)에 의한 폐기처리

5. 공고내용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항동7가 9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항만시설(부지) 내 무단 적치물(가설 컨테이너)를 공고기간 내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반출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 시행 시 우리청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한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귀하께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송달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항만물류과(☎ 032-880-621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제2026-2호

행정대집행 고고서

성명(단체명) 신원미상 귀하

주소: 미상

귀하께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만시설(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항동7가 90)에 불법으로 가설 컨테이너를 무단 적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7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적치물 자진반출) 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4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항동7가 90	가설컨테이너	1개소	우리청 또는 제3자(인천항만공사)에 의한 폐기처리

2026 년 9 월 23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붙임2

위치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항동7가 90

□ 대 상 : 무단 가설컨테이너 1개소

위치도



상세위치



